

#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폐지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반영

(안 제2조1항)

나.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명칭변경 반영

(안 제2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: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1항2호  
따라 입법예고 미실시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단순변경으로 해당 없음

##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「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붙임]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】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.

### 【 폐기물 관리법 】

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·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23.>

### 【 지방자치법 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
연락처	(033) 330 - 2340